

강원도립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운영규정

(제정) 1999-04-26 규정 제047호

(개정) 2004-04-30 규정 제146호

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63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8조에 규정된 지역사회의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단기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과정의 명칭) 이 규칙에 따라 개설되는 과정은 “산업체위탁교육 연수과정” (이하 “위탁교육과정” 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3조(과정의 개설시기 및 기간) ① 위탁교육과정은 동계 및 하계방학기간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산업체로부터 위탁교육과정 개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방학기간 이외에도 따로 위탁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.

② 위탁교육과정의 개설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. 그러나 산업체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입안) 교학처장은 매 학년도 말에 차기 학년도의 위탁교육과 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5.3> <개정 2016.4.25>

제5조(교과목) 위탁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학처장이 긴밀한 산학협조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0.5.3> <개정 2016.4.25>

제6조(담당교원의 배정) ① 교학처장은 소속학과장과 협의하여 위탁교육과정의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을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0.5.3> <개정 2016.4.25>

② 교학처장은 위탁교육과정 교과목 중 산업체의 자원인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, 미리 소속 산업체의 장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0.5.3> <개정 2016.4.25>

제7조(강사료 지급) 위탁교육과정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 및 외래강사에게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교재발간 및 공급) 위탁교육과정의 교재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이 교학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. <개정 2010.5.3> <개정 2016.4.25>

제9조(수료증서 수여) ① 위탁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는 수료증서 서식 제 1호를 수여한다.

② 전항의 수료증서는 위탁교육과정 수료대장에 기록한다.

제10조(예산) 소요경비는 수업료로 충당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1조(기타) 위탁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(2009. 4. 26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4. 30)

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3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